



제 439국회 (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위 취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1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학원위원회의 설립 근거 마련	3
2. 입학허가의 취소 사유 추가	6
3. 학위 수여 취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6. 4. 24.
3. 회 부 일 : 2026. 4.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 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입학한 자의 상급 학위와 입학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학위 취소로 인하여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학원위원회의 설립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¹⁾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대학원) ① · ② (생략)	제29조(대학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대학원의 입학·수료, 학위의 수여 및 취소 등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운영, 제3항에 따른 대학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재 대학원에서는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 교육과정 운영, 학과 등의 설치·폐지 등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러한 대학원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대학원위원회가 입학, 학위수여, 교육과정, 학과 설치·폐지 등 학생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학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원위원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심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또한,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대학평의회(제19조의 2)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제11조)의 설치 근거가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원 운영에 관한 핵심 심의기구인 대학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제도적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대학원위원회는 대학 내부의 학사운영 기구로서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운영 영역에 속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도 대학원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령 규정으로 인하여 제도 운영상 특별한 공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그 설치 근거를 반드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대학원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법률로 상향 입법해야 할 만한 법적 공백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입학허가의 취소 사유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입학허가의 취소 사유로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등이 증명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허가를 한 학생이 <u>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u>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u> 2. <u>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u> 3. <u>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4조의6에서는 입학허가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대학이 입학 당시 자격을 오인하거나 사후적으로 입학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입학허가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학취소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안 제34조의6제2호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입학허가의 취소가 필요하지만,

제3호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이미 제1호(부정행위), 제2호(자격흠결)가 인정되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취소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그리고 대학의 장이 법원의 확정판결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별도의 통보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대학의 장이 확정판결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학위 수여 취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는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수여도 함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며, ③ 상급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취소된 학위 수여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등) ① 대학의 장(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위(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를 수여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3. 본인이 학위 수여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명예박사 학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의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학위가 취소된 경우 그 학위를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가 취소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된 해당 학위 외에 다른 유효한 학위를 함께 활용하여 상급 학위 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급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학위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상급 학위를 수여(상급학교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대학의 장은 해당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학위 수여의 취소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학위 수여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① 학위 취소의 근거 마련

- 현행법 시행령 제52조²⁾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현행법 제35조³⁾에 따라 수여한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일부에서는 법 문언에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면, 엄격한 법적 해석을 통하여 입학 단계에서 발생한 부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 실무적으로는 입학 자체가 부정하면 그로 인한 학위도 무효라고 해석하여 이를 학위취소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등에도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위 제도의 공신력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개정안의 학위 수여 취소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 시행령상 학위 수여의 취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한 것임.

4)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현행 규정과 개정안 비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관련 규정	개 정 안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등) ① 대학의 장(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상급 학위과정에서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위(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를 수여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학위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3. 본인이 학위 수여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명예박사 학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의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 2. 제1호 외의 학위: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

□ 다만,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안 제35조의제1항제3호의 “본인이 학위 수여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학위는 단순한 개인 자격이 아닌 대학이 공적으로 수여한 학문적 성취의 확인 행위이므로, 개인의 자유 의사만으로 임의 취소 신청이 가능해질 경우, 학위제도의 공신력 및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⁵⁾

5) <참고자료 1> 개정안에 대한 개별 대학 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본인이 학위 수여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학위 수여 취소 요건에 포함시키는 경우, 학위제도의 공신력 및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② 상급 학위의 수여 취소

- 개정안은 학위 취소 규정 뿐만 아니라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수여도 함께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억제하여 학위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도 취소될 필요가 있으며, 각 학위별로 학위 취소를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한번에 학위를 취소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
- 다만, 개정안을 입법하더라도 상급 학위를 수여한 대학은 해당 학위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⁶⁾

6)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의 수여를 취소한다고 의제하더라도 상급 학위를 수여한 대학은 해당 학위가 취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어 학위증명서 등의 발급을 계속 할 수 있음.

- 교육부는 학위 취소시 상급학위 수여 또한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더라도 상급학위를 수여한 대학은 해당자의 하급 학위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과 대법원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무효에 해당한다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⁷⁾

③ 학위 수여의 취소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 개정안은 학위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상급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이 취소된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학위 수여의 취소와 관련된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상급 학위 수여의 취소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 제3항은 학위가 취소되면 그 학위를 입학자격으로 취득한 상급 학위도 연쇄적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취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⁸⁾ 학위의 취소를 위한 적절한 심의를 위해서는 하위 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어떠한 사유로 학위를 취소했는지 등 핵심적인 검토 자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겠음.

7) 안 제35조의2제3항 단서조항(다만, 취소된 해당 학위 외에 다른 유효한 학위를 함께 활용하여 상급 학위 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급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입학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중대한 하자 등 요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임.

8) 안 제3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라 학위가 취소된 경우 그 학위를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가 취소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된 해당 학위 외에 다른 유효한 학위를 함께 활용하여 상급 학위 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급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하위 학위가 취소되었음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급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급 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권한이 부여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다만, 학위 수여의 취소와 관련한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학위 수여가 취소되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상급 학위 수여 대학이 하급학위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아는 경우가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개정안이 “학위가 취소된 사람”으로 자료 제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남용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8

- (경북대)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학위수여의 신뢰성 확보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은 학위 취소와 입학허가 취소라는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법률상 포괄적으로 확대하면서도, 대학의 학사운영 자율성, 학생의 절차적 권리, 개인정보보호, 행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반대함
- (서강대) 개정안 문구는 본인의 임의적 요청만으로 학위취소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학위수여의 공정성 및 제도 신뢰성 유지에 부합하지 않음
- * (예시)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가 해당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기 전에 자진하여 '본인 요청' 형식으로 학위취소를 신청함으로써 징계나 법적 제재를 회피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연세대) 법령을 통해 대학원위원회의 설치,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이 이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상위인 법률로 상향 입법해야 할 만한 법적 공백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 학위는 단순한 개인 자격이 아닌 대학이 공적으로 수여한 학문적 성취의 확인 행위이므로, 개인의 자유 의사만으로 임의 취소 신청이 가능해질 경우, 학위제도의 공신력 및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하급 학위 취소 대학이 해당 학생의 상급 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상급 학위를 수여한 대학 또한 타 대학의 학위 취소 사실을 별도로 통보받지 않는 이상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
 - 특히 개정안 제35조의2 제4항은 해당 대학이 학위 취소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인 집행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포항공대) 개정안은 상위 대학의 '요청'이 있어야 하위 대학이 '응하는' 구조이나 상위 대학이 하위 학위의 결격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하위 대학이 졸업생의 진학 정보를 전수 관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하위 대학이 능동적으로 통보하고자 하여도 통보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움